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
------------	-----

제출년월일 : 1996.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 안이유

농지법('94. 12. 22, 법률 제4817호) 및 동법시행령('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가 제정되어 '96. 1. 1부터 시행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의 각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함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전면 개정함  
(조례안 제3조)
- 영주시사무위임조례증 농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개정함(부칙 제2항)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자료 : 붙임

농지법 관련조항 발췌 1부.

##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과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제1항증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영 제14조 제1항"을 "영 제65조"로 한다.

제7조증 "영 제23조"를 "영 제8조"로 하고,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자격"으로 한다.

제10조증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호"를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2】 위임사무(권한위임)중 "농정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lt;별지&gt;

## 【별지 제1호 서식】

##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임차인 대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임대인 대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리)을 대표하여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9 년 월 일

○○읍·면·동장

○

첨부서류 : 1. 후보자(임차인대표)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2. 후보자(임대인대표)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lt;별지&gt;

## 【별표2】

## 위임사무(권한위임)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정과	1. 농지취득자격증명 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등본등의 교부등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관리  2. 농지원부등본 교부  3.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농지법 제52조 제2항	동장  동장  동장  동장

##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 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 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 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지법 ───────────────── 농지법시행령 ──────────────── ──────────────── ────────────────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 여 임대차의 담사기간에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종 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 인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로, 종교 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현 행	개 정 안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 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 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 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 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 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8.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과 농지 및 그 임 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9.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 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는 사항의 심의	9. <삭 제>
제5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등·리 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등 ·리개발위원회(동·리개발위원회가	제5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 법 제47조제2항제2호 ————— ————— —————

현 행	개 정 안
<p>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리개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로 명시)를 소집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다만, 동지역은 법정동 단위이며 가족 등은 2인으로 한다.</p> <p>② ~ ③ &lt;생 락&gt;</p> <p>제7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별표3】과 같다.</p> <p>【별지제1호서식】</p> <p>"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본문중 위 사람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리)을 대표하여 농지 관리위원회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영 제65조의</p> <p>② ~ ③ &lt;현행과 같음&gt;</p> <p>제7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 영 제8조의 —————, 농지취득자격의 —————.</p> <p>제10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p> <p>【별지제1호서식】</p> <p>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p> <p>—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의 —————.</p>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무 ( 권 한 위 임 )					【별표2】 위 임 사무 ( 권 한 위 임 )				
소관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농경과	1. 농지매매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 한	1. 농지매매 증명발급	농지임 대차관 리법제 1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9조	동장	농경과	1.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예관한 다 음의 권한	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동장
	2. <신설>					2. 농지원부 의작성 및 등 본동의 교 부동에 관 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원부 의 작성 비 치 및 관리 2. 농지원부 등본교부 발급	농지법 제51조 및 제52 조제1 항	동장
							3. 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52조 제2항	동장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1994년 12월 22일 法律 第4.817號</p> <p><b>第1章 總 則</b></p> <p>第1條(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이 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產性向上을 통한 農業의 競爭力強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li> </ol> <p>第8條(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區庭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邑長 또는 面長(이하 “市·區·邑·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第6條第2項第1號·第3號·第5號第7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li> <li>農業法人의 合併으로 農地를 취</li> </ol>	<p>19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 14.835호</p> <p><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995년 12월 29일 농림수산부령 제 1.217호</p> <p><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p>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독하는 경우</p> <p>3. 共有農地의 分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p> <p>第10條(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① 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p> <p>1. 所有農地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民·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p> <p>2.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農業會社法人이 第2條第3號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月 이 경과한 때</p> <p>3.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그 農地를 당해 目的事業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p> <p>4. 第6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취득한 날부터 2年이내에 그 目的事業에 차수하지 아니한 때</p> <p>5.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 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p>	<p>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農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자체없이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農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6. 計算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받았아 農地를 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p> <p>7.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農業經營計劃書의 내용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市長· 郡守 또는 里鄰長이 인정한 때</p> <p>第16條(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第5項의 规定에 의한 同意를 얻은 후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事業施行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第5項의 规定에 의한 同意를 얻은 후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승인할 때에는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1.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區域</p> <p>2.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 賃借權을 設定받을 者, 所有權을 移轉받을 者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할 者에 관한 사항</p> <p>3. 賃借權이 設定되는 農地, 所有權이 移轉되는 農地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하는 農地에 관한 사항</p> <p>4. 設定하는 賃借權의 내용, 農業經營受委託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p> <p>5. 所有權의 移轉時期, 移轉의 代價 및 그 지불방법 기타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사항</p> <p>⑤事業施行者는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號의 구분에 따라 당해 計劃에 포함된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1. 第1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移轉促進事業의 경우에는 所有權者의 3分의 2이상</p> <p>2. 第1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賃借權設定促進事業의 경우에는 賃借權을 設定하는 者 및 設定받을 者의 3分의 2이상</p> <p>3. 第14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經營促進事業의 경우에는 受委託者(受託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 告示후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委託者를 말한다)의 3분의 2이상</p>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第25條(賃借料의 上限) ① 賃借料의 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地域別·農作物別로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業議를 거쳐 市(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郡의 領例로 정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의 上限을 초과하여 賃貸借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p>	<p>제27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임차료상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달 또는 과수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li> <li>시설원예작물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년성식물에 대한 임차료의 상한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중 전·달 또는 과수원의 구분에 갈음하여 해당 작목별로 그 상한을 정할 수 있다.</li> <li>임차료상한은 당사자간에 임차료를 수확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확후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임차료상한에서 임차료의 지급일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li> </ol>	<p>제22조(임차료의 상한조정등) ①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검토결과 그 임차료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p>
<p>第36條(農地의 轉用許可·協議) ①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p>	<p>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li> </ol>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허락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擬制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li> <li>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规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规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 第2項第1號但書의 规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li> <li> 第37條의 规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li> <li> 火田整理에 관한法律에 의한 정리 대상이 되는 農地와 山林法에 의한 山林毀損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不法으로開墾된 農地를 山林으로 恢復하는 경우</li> <li> 河川法에 의하여 河川管理廳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農地를 形質變更하거나 工作物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li> </ol> <p>第37條(農地의 轉用申告) ① 農地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市長·都守 또는 自治區區長에게 中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p>	<p>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p> <p>④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 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등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li> <li>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궁궁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업 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지역으로서 용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li> </ol> <p>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p> <p>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p> <p>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p> <p>제30조(농지전용 신고)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li> <li>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li> </ol>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業人住宅 農業用施設 農水產物流通·加工施設</li> <li>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農業人의 共同生活 訓查施設</li> <li>農水產關聯 研究施設과 養魚場·養殖場등 漁業用施設</li> </ol> <p>第38條(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등) ①農地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農地로復舊하는 조건으로 農林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農林水產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中告對象施設이 아닌 簡易農業用施設과 農水產物의 簡易處理施設을 敷置하는 경우</li> <li>主目的事業(당해 農地에서 허용</li> </ol>	<p>제42조(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p> <p>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농지의 태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li> <li>태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일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일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li> <li>태용도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li> <li>당해 농지의 태용도사용이 농지개</li> </ol>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現場 <sup>事務所</sup> 또는 附帶施設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을 設置하거나 물건을 横置·埋設하는 경우		<p>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p> <p>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 <p>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p>
<p>第51條(農地原簿의 작성비치) ①市·區·邑·面長은 農地의 所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sup>大統領</sup>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原簿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市·區·邑·面長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農地原簿을 작성·정리하거나 農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p> <p>1. 1천세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p> <p>2. 농지에 330세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p> <p>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p>	<p>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밖에 소개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농 지 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第52條(農地原簿의 認覽 또는 標本등의 교부) ①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認覽 또는 그 標本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認覽하게 하거나 그 替手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市·區·邑·面長은 自耕하고 있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耕證明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슬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p>
	<p>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주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p>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附 則</b></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 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다른 法律의 废止) 다음 각호의 法律은 이를 废止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農地改革法</li> <li>2.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特別措置 法</li> <li>3.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li> <li>4. 農地貸借管理法</li> <li>5. 地力增進法</li> </ol>		